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12. 16.(금)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6 의결사항

가.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에 관한 건 - (2011-73-424)

-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주)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허가신청 법인별 심사결과>

심사사항	배점	심사결과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 (KMI)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50점 32.244점 (64.488)
	2. 재정적 능력	25점 16.806점 (67.224)
	3.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25점 16.740점 (66.960)
	총 점	100점 65.790점
(주)인터넷스페이스타임 컨소시엄 (IST)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50점 32.932점 (65.864)
	2. 재정적 능력	25점 15.123점 (60.492)
	3.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25점 15.870점 (63.480)
	총 점	100점 63.925점

※ ()의 수치는 각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 점수임

※ 허가요건 :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 획득

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1-73-425)

-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59차 위원회('11. 10. 24) 보고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음

○ 주요 내용

①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2·3항)

- (개정사유)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요금감면 서비스 추가 지정 및 대상자 확대 필요
- (개정내용) 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②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

②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안 제28조 별표2)

- (개정사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시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제한한 기술인력 요건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완화 필요
- (개정내용)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된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사)를 기술인력 요건에 추가

③ 무선재판매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 신고(안 제31조제1·2항)

- (개정사유) 별정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출하고 있으나, 약관 변경 시에는 재등록·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등록시 점과 다른 부당한 약관에 대한 관리 수단 마련 필요
- (개정내용) 별정통신사업자(별정1호, 별정2호, 별정4호) 중 무선재판매 사업자(이하 "MVNO"라 함)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
- 별정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되,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MMNO에 한해 적용

④ 이용자 피해 확인 절차 마련(안 제44조, 제45조 별표4)

- (개정사유)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무단가입, 부당과금 등)를 한 경우,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개정내용)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 보존과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를 시정조치 사항에 추가하고, 그 이행기간을 신설

⑤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 구체화(안 제51조의2제3항)

- (개정사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심사기준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할 필요
- (개정내용) 심사기준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보안대책의 적정성,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등으로 구체화 하여 규정

○ 향후 일정

- 법제처 심사 : '11. 12월
-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 '12. 1월

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 (2011-73-426)

-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과정 등을 거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장애인방송 제공대상사업자 (안 제5조)

-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사업자와 방통위가 사업자의 매출액과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 고시사업자로 구분

· 지정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고시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② 사업자별 편성목표 (안 제6조, 제7조)

- 2012년을 기점으로 하여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중앙지상파는 2013년), 유료방송사는 2016년까지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달성토록 함

· 편성비율은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는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를 목표로 하고, 위성방송과 SO는 지상파의 70%, 일반PP는 50% 수준을 목표로 설정

③ 장애인방송 성실제공 및 유형표시 의무 (안 제8조, 제9조)

- 장애인방송 송신/재송신시 장애인방송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방송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하도록 함

④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점검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저작권이 문제가 되거나 제작이 곤란한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장애인 방송 편성 예외 프로그램으로 인정

⑤ 기타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안 제15조)

- 주문형 비디오(VOD) 등 비실시간 방송,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등에 대하여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향후 계획

- 관보 게재 및 고시 시행 : '12. 1. 1

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1-73-427)

○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56차 위원회('11.10.13) 보고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위원회 보고 후 변경 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例 : 프로그램→방송프로그램, 불리한→현저히 불리한)

○ 주요 내용

①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구체화

- 방송법상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여 총 24가지 세부유형 마련

< 방송법상 금지행위 세부유형 >

유형 (법)	세부유형 (시행령)
I. 채널 프로그램 제공, 필수설비 접근거부, 채널편성 변경 등	1.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2. 채널을 제공하면서 채널 제공과 관련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3.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4.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과 관련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5.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로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이 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이하 "필수설비"라 한다)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등이 계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필수설비를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7. 필수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필수설비와 관련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8. 채널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 채널 편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
II. 적절한 수익배분 거부 등	9. 적절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10. 이면계약 등을 통해 수익배분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1. 수익배분 관련 계약조건 또는 수익산정 범위와 방식 등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하여 적절한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III. 방송 시청의 방해 등	12.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3. 단체계약 체결을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한 개별 시청자에게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지연·거부·제한하는 행위
	14. 과도한 이익제공 또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5. 거짓 고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16. 시청자와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유형 (법)	세부유형 (시행령)
IV.부당한 시청자 차별	17. 장기, 다량, 가입전환 또는 가입미전환 등 특정 시청자에게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
	18. 방송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저하게 유리·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
	19. 결합판매시 현저하게 유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부당하게 시청자 차별
V.이용약관 위반 등	20.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 제공
	21. 이용계약과 다르게 이용요금 청구
	22.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 제공
VI.시청자 정보 부당유용	23.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24.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
기 타	0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I.~VI.까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 금지행위의 기준을 고시 할 수 있음

②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과징금 상한액(매출액의 2/100이내), 기준금액 산정방법 및 절차 규정
- ※ 부과기준을, 가중·감경 사유 등은 고시로 위임 (12.16. 과징금 고시안 위원회 보고 예정)

③ 경쟁상황평가 방법 구체화

- 경쟁상황평가위원 구성방법, 평가 기준·절차 등 규정

o 향후 일정

- 법제처 심사 : '11년 12월
- 차관회의, 국무회의 : '12년 1월 초
- 공포 및 시행 : '12년 1월 15일

마. 한국방송공사의 '오작교 형제들' 재심에 관한 건 - (2011-73-428)

- o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오작교 형제들'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11.10.21)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재심 청구('11.11.18)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원심 제재조치를 완화하여 '경고'를 명하기로 의결함

※ 원심 결정 내용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등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 '오작교 형제들'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 처분

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한국방송공사 등 6개사 - (2011-73-429)

-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7조 및 「전파법」 제22조에 의거, '11. 12. 31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제1안과 같이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허가 하기로 의결함

< 재허가 사업자 개요 >

사업자명	대표자	허가 만료일자	방송구역
한국방송공사	김인규	2011. 12. 3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문화방송	김재철		
(주)에스비에스	우원길		
(주)와이티엔디엠비	배석규		
한국디엠비(주)	김경선		
유원미디어(주)	주상균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방송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산정,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① 기준금액의 산정 (안 제4조, 제5조)

- (관련매출액)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서비스 수익(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홈쇼핑송출수수료 및 기타 방송수익 등) 중
-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방송서비스의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산정
-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정하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상 과징금 부과규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규정

② 필수적 조정 (안 제6조)

-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최고 100%)
- (위반기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최고 50%까지 가산
- (위반횟수)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3회이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3회 위반시부터 1회당 기준금액의 20% 가산(최고 50%)

③ 추가적 조정 (안 제7조)

-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고의·과실여부, 조사협조 여부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 향후 일정

-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 : '11년 12월
- 위원회 심의·의결 : '12년 1월 초
- 관보게재 및 시행 : '12년 1월 15일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반기로 완화하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는 등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기간을 매반기로 완화(안 제3조)

②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개정(안 제5조)

-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 점수 합계가 만점(22점)의 60% 이상(14점)인 경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
- (국내자본 비율) 공동제작 다큐멘터리나 외주 드라마의 경우 외국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제작사측 의견과 기 체결된 공동제작 협정을 감안하여 국내자본 투자비율을 30%로 설정
- (점수배점) 기획 및 제작형태와 인력의 구성 기준으로 제작의 전 과정을 제작요소에 따라 기획·연출, 연기자·출연자, 제작·작업으로 3분하여 총 22점으로 구성
- (인정신청) 외국자본의 투자가 있거나 외국인이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제작의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 신청
- (자문위원회)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5 ~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③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 개정(안 제7조)

- 애니메이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작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정기준에 필요한 항목과 점수를 조정
- (인정대상 애니메이션 범위)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한 작업물로 범위를 명확화
- ※ 다만, 전체 내용에서 실사영화가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단순 동작을 반복하는 영상물은 인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준) 저작권과 수익분배권을 보유한 작품으로 신청기준을 강화하여 창작 제작 구조로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부가가치 극대화를 유도
- (인정기준)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요소별점수 합계가 16점(30점 만점) 이상인 경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
- 외국과의 공동제작협정에 따른 제작물도 국내제작 인정 근거 마련
- (배점조정)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이 외국 하청제작에서 국내 기획제작으로 변화됨에 따라 사전 기획단계의 점수를 상향(10~12점→14점)하고, 제작단계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
- (가점항목 명확화) 국내인이 개발한 고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점 범위내에서 가점

④ 외국제작 영화·애니메이션 국적 구별기준 마련(안 제8조의2)

- 시나리오(1점), 감독(1점), 제작사(2점), 주연/캐릭터(1점) 등 총 5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인 국가의 제작물로 결정하되, 2개 국가 이상이 공동으로 제작하여 2개 이상 국적으로 분류될 경우 제작사를 기준으로 분류

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안 제9조의2)

- 작가출연자·주요 스태프 계약체결, 제작비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경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
- (자문위원회) 외주제작 인정 여부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5~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⑥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준 마련(안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 외주제작사와 촬영원본을 공유하거나, 주시청시간대 교양분야의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 산정시 가중치 부여

⑦ 3D 전문채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외국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 적용 한시 유예(부칙)

- 3D 전문채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 및 외국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향후일정

- 부처협의 및 입안예고 : '11. 12.
- 규제심사 : '11. 12. ~ '12. 1.
- 위원회 의결, 관보게재 및 시행 : '12. 1.

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지상파방송 3사의 제작협찬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현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① 지상파방송 3사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허용범위 설정(안 제8조제3항)

㉠ 허용원칙 및 정책목표 : 오락과 교양분야에 대한 제작협찬을 허용하여 경쟁을 통한 제작활성화와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되, 협찬 재원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여 외주제작사를 보호

- (드라마) 외주제작 위주의 드라마시장에 방송사의 자체제작이 가능하도록 제작협찬을 허용함으로써 ▲제작시장의 경쟁 활성화 ▲연기자·작가·연출인력 등의 신규제작 인력 육성 ▲출연료·작가료 등 요소가격 안정화

- (예능) K-POP 등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품격 예능 프로그램 제작 유도

- (교양) 일반 교양프로그램 제작비보다 높게 설정 ▲고품질 교양 프로그램 제작 유도 ▲제작비 현실화 달성

㉡ 부문별 제작협찬 허용범위

- 오락프로그램

· 드라마 : 회당 제작비 2억 원 이상이거나 편성횟수 120회 이상
(단, 단막극은 제작비에 관계없이 허용)

※ 회당 제작비 : 내부직원 인건비·내부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일반관리비 제외(이하 같음)

· 예능 : 회당 제작비 7천만 원 이상

- 교양프로그램 : 회당 제작비 5천만 원 이상

② 기타사항

㉠ 방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방송사 및 그 특수관계자의 제작협찬 금지규정 삭제(안 제2조제8호)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 캠페인 협찬 가능 규정 추가(안 제7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 정비(안 제4조 및 제13조)

㉡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 협찬을 받는 사업자를 방송사업자에서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자로 규정을 명확하게 재규정(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규제위 심사 등 '11. 12월중 ~ '12. 1월초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관보 게재 및 공포 '12. 1월중

㉘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12. 28(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35)